

「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3. . .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함.
- 제7조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, 제6조 및 제7조로 함.

「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.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,

제7조,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5조,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 및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창작공간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. 창작공간 입주작가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. 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	<u><삭 제></u>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(互選)한다.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u><삭 제></u>
제7조 ~ 제9조 (생략)	제5조 ~ 제7조 (원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

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.
2. “예술인”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창작공간”이란 작업실,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.
4. “입주”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(이하 “창작공간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(기능)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화예술 창작활동
2. 전시실 운영
3.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
4.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
6.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입주작가 활동 지원) 시장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작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창작활동 지원금
2. 전시 및 작품집 출간 비용
3.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·운영하는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운영규정)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